### 임시주주총회 결과 공시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하여 2017년 8월 1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#### - 다 음 -

- 1. 주주의 참석률 :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97.1%
- 2.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

안건명 : 정관 변경의 건

(1) 찬성: 1,898,000주 (89.6%)

(2) 반대: 160,000주 (7.6%)

#### 3. 주식 수 보고

- (1) 발행주식 총수 : 2,118,000주 (의결권 있는 주식수 : 2,118,000주)
- (2) 의결권 행사 주식수 : 2,058,000주

#### 2017년 8월 23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(대치동, 글라스타워빌딩 19층)

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대표이사 최병길

# 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7년 8월 18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: (주)무궁화신탁

(영문명) MUGUNGHWA TRUST CO., LTD. (홈페이지) http://www.mgtrust.co.kr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, 19층(대치동, 글라스타워빌딩)

(전 화) 02-3456-0000

대표이사: 최병길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본 부 장

(성 명) 정 의 수 (전 화)02-2097-1102

작 성 자: (직 책) 대 리

(성 명) 조 민 정 (전 화)02-3456-0043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(제11-11-2호)

## 임시주주총회 결과

1. 결의사항	정관 변경의 건
2. 주주총회 일자	2017. 8. 18.
3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-

### ■ 첨부서류

1.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.

# 임시주주총회 의사록

일 시: 2017년 8월 18일 오전 10시 - 10시 30분

장 소 : 본점 대회의실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, 19층(대치동, 글라스타워빌딩)

참석자 : 주주총수 18 명, 발행주식 총수 2,118,000주

참석주주 수 2명, 참석주식 수 165,000주

위임주주 수 15명, 위임주식 수 1,893,000주

출석주주 수 17명, 출석 주식 총수 2,058,000주

의장인 대표이사 최병길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, 본 주주총 회는 소정의 소집절차에 따라 소집되어,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, 본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성립함을 고한 후 개회를 선언 하다. 이어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#### 제1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

의장은 당사의 현행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의 승인을 구한 바, 반대 의사표시를 한 주주 원병민(주식 수 16만주)를 제외한 출석주주 전원이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.

개정 전	개정 후
제9조 (주식 및 주권의 종류)	제9조 (주식 및 주권의 종류)
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발행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 ②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, 10 주권, 100주권, 1,000주권, 10,000주권 및 100,000주권의 6종으로 하되,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주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할 수있다.	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고, 주식의 발행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 ②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, 10주권, 100주권, 1,000주권, 10,000주권 및 100,000주권의 6종으로 하되,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주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할 수있다. ③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은 이익
(신설)	배당에 관한 우선주식,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.
③ 회사는 주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58조의 2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.	④ 회사는 주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58조의 2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개정 전	개정 후
	제9조의2 (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)
(신설)	① 회사가 발행할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은 배당우선주식(이하 이조에서는 "종류주식"이라 함)으로 하며,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이백만주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
	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3% 이상의 배당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.
	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.
	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.
	⑤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도 의결권은 부활하지 아니한다.
	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 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 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	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.
	⑧ 종류주식의 이익의 배당은 금전으로 하며,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개정 전	개정 후
기ITÖ 전	제9조의 3 (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)
(신설)	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(이하 이조에서는 "상환주식"이라 함)으로 하며,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이백만주의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
	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「발행가액+연 15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 금액」으로 하며, 가산금액은 배당률,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. 다만,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, 조정사유,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.
	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 단,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.
	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. 이 때 회사는 상환할 뜻 및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. 단,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,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.
	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 주는 자신의 선택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수 있다. 이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회사는 현존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 상환할 수 있고,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.
	⑥ 상환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.

개정 전	개정 후
	제9조의 4(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)
(신설)	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(이하 이조에서는 "전환주식"이라 함)으로 하며,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이백만주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결로 정한다.
	②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. 1. 보통주식의 주가가 전환주식의 주가를 (1 년 평균 1.3배) 상회하는 경우 2. 전환주식의 유통주식 비율이 (1년간 10%) 미만인 경우 3.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
	③ 전환주식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전환 주식 1주당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 1 주로 한다. 단,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 하는 신주의 발행가액(발행가액결정의 계산 방식을 포함한다)을 정할 수 있고,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(유상증자, 무상증자,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, 주식배당 등) 등 전 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	④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2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
	⑤ 전환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.
(신설)	제9조의 5 (주식의 상환과 전환에 관한 종 류주식)
	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인 것 (이하 이 조에서는 "종류주식"이라 함)으로 하며, 그 발행주식의 수는이백만주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
	② 전환과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9조의3 제 2항 내지 제6항 및 제9조의4 제2항 내지 제 5항을 준용한다.

개정 전	개정 후
	제18조의 2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
(신설)	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	1.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.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.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. 긴급한 자금의 조달 또는 사업확장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, 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투자조합, 일반법인 및 개인 등 기타관계자에게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	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이사회가 정한다.
	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하고, 발행대상 주 식의 종류는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.
	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 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.
	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상기와 같이 상정된 의안이 직접 처리되었음을 확인한 후 의장은 본 임시 주주총회의 폐회를 선언하다. 임시주주총회의 회의경과와 결의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다.

2017년 8월 18일

### 주식회사 무궁화신탁

의장 대표이사 최 병 길 법인도장

사내이사 권 준 명 개인도장